

##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

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 제51조제2항에 의거 '안산 다문화 마을특구 등 2개 특구'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

2014년 7월 18일  
중소기업청장

### 경기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계획변경

#### 1. 특구계획 변경목적

-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업의 추진 필요
- 전국 최고의 외국인밀집지역인 안산의 문화적 다양성, 개방성, 융합의 특징을 도시경쟁력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#### 2. 특구계획 변경사항

- 사업 기간 : (당초) 2009년~2013년 → (변경) 2009년~2018년(5년 연장)
- 특구의 위치/면적 :  
(당초) 단원구 원곡동 795번지 외 910필지 / 367,541㎡  
→ (변경) 단원구 원곡동 795번지 외 911필지 / 373,553㎡(증6,012㎡)  
※ 글로벌다문화센터(6,012㎡) 추가
- 사 업 비 : (당초) 186.5억원 → (변경) 233.9억원(증47.4억원)

○ 기타 세부사업 변경사항

- 신규사업 추가 : 글로벌다문화센터 운영, 특화 교육프로그램 및 커뮤니티센터 운영
- 추진보류 사업 : 다문화원 건립
- 사업비 증액 : 외국인주민센터 운영 활성화, 만남의 광장 활성화, 특화 거리 조성, 세계 전통 민속축제 개최

3. 규제특례사항

-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(법 제23조) 해제(그 외 변동 없음)

4.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

- 지방자치단체 해당 부서(안산 외국인주민센터)에서 열람

5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-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(Tel : 042-481-1616, 1617) 또는 경기도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(Tel : 031-481-3733)에서 열람할 수 있음

**제주 추자도 참굴비·섬체험특구 계획변경**

1. 특구계획 변경목적

- 특구지정 이후 특화사업을 통해 생산기반 인프라가 구축되고, 참굴비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소득창출 기대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음
- 당초 특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구기간의 연장, 지속적인 투자와 대내외 홍보를 통한 방문객 유치 필요

## 2. 특구계획 변경사항

- 사업기간 : (당초) 2009년~2013년 → (변경) 2009년~2018년(5년 연장)
- 사업비 : (당초) 162.2억원 → (변경) 194억원 (31.8억원 증액)
- 특화사업자 : (당초)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→ (변경) 제주시장
- 기타 세부사업 변경사항
  - 신규사업 추가 : 하추자도 월파방지사업
  - 추진중단(사업포기) : 외국인 선원 복지센터건립사업
  - 사업비 증액 : 체험마을 지원사업, 참굴비 축제 활성화사업, 낚시 관광화 사업

## 3. 규제특례사항 : 변동없음

## 4.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: 변동없음

## 5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-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(Tel : 042-481-1616, 1617)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양수산과(Tel : 064-728-3361)에서 열람할 수 있음